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2017.12.22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①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고 한다)에는 실장을 두되 상담센터의 상담실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실장은 상담센터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3.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적, 법적, 의료적 구제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5.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관리·지도 등에 관한 업무
6.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정책 수립
7. 대학 내 학과, 연구소 등의 기관 그 밖의 학내 부서 등의 자체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관련 조치 이행 등을 위한 자문
8.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④ 상담센터장은 전문상담원 등을 포함한 상담실 구성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방법) 신고는 서면(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포함),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직권조사) 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건 조사 및 처리의 필요성이 현저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를 받은 사실이 소명되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도 피신고자로 인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피해자, 신고자 또는 관계인 등이 2차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지된 때에 그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5조(사건처리절차) ①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상담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요구받은 전문상담원 등이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이 조사의 공정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상담센터장의 결정에 따라 다른 전문상담원 등이 상담할 수 있다.

② 조사에 참여한 전문상담원 또는 자문위원 등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처리의 기간) ① 규정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담센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및 처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경찰청
2. 검찰청
3. 국가인권위원회
4.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③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처리절차의 중단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할 수 있다.

제7조(조사의 방법)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다.

1.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제8조(출입 제한의 방법)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서 대학 내 특정 공간에 대한 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출입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한 시간대를 지정하여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와 대면·접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는 가해자의 그 특정 공간에 대한 출입 또는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가해자 명부의 작성·보존)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해자명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가해자의 이름
2. 가해자의 소속
3. 가해자의 학번
4. 가해자의 연락처(전자우편 계정 및 휴대전화 연락처)
5. 가해자의 주소
6.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재발방지서약회의) ① 규정 제21조에 따른 재발방지서약회의(이하 “서약회의”라고 한다)는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1. 교원 : 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교무처장 이외에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가해자 소속 학과주임교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학과주임교수 아닌 교원 1인과 학과주임교수가 참석한다. 학과주임교수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다른 교원 2인을 참석하게 한다.
2. 직원 : 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행정처장 이외에도 가해자의 직계 선임인 직원 2인이 참석한다. 직계 선임인 직원 2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행정처장이 협의하여 직원 중에서 참석자 2인을 선정한다.
3. 학생 : 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입학학생처장 이외에도 가해자의 학업지도교수 및 가해자 소속 학과주임교수가 참석한다. 학과주임교수가 학업지도교수인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다른 교원 1인을 참석하게 한다.

② 규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재발방지서약서에는 가해자를 포함한 서약회의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가해자의 이름
2. 가해자의 소속
3. 인정된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
4. 대책위원회의 조치 사항 또는 중재 등 절차에서 협의된 조치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규정 제21조 제5항에 따라서 제출받은 재발방지서약서는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해자 명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11조(학과주임교수 관리·지도의 면제) 규정 제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고 가해자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 제21조에 따른 서약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규정 제22조 제4항에 따른 학과주임교수의 관리·지도를 면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